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4일 03시 29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설치제한	3

설치제한

2014.04.17 조회수 585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12
담당부서	노인장애인과
상위법령	장애인복지법 제42조
조례	여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9조
유형	3호 - 금지(부작위)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2000-08-11
규제시행/폐지일	2000-08-11
규제내용	제9조(설치의 제한)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체결한 자가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, 동일인에게 설치 계약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 수량은 3기 이하로 한다.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11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13

Yeosu Web Contents

